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8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7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8일)

상정 · 심사 · 원안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13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외교부장관 조태열)

가. 제안이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2007.7.19.부터 파견되어 2024.12.31.까지 연장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1.1.부터 2025.12.31.까지 1년간 연장함.
- (2) 국군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임.
- (3)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
- (4)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所要經費)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 받음.

다.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헌법 제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89조제6호 및 「국제
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2) 예산조치 : 2025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 검토의견

1. 개 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¹⁾은 1978년 3월 19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25호²⁾와 제426호³⁾에 의해 설치되었음. 2006년 8월 11일 결의 1701호⁴⁾에 의해 병력이 증강되었고(2,000명 → 15,000명), 교전중지 감시 등의 임무가 추가되었음. 2024년 8월 28일 안보리 결의 제2749호⁵⁾에 따라 2025년 8월 31일까지 임무가 연장됨.

2024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네팔, 인도, 가나, 말레이시아 등 49개국이 9,732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레바논 지역의 평화와 안전회복을 위한 교전 중지 감시,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활동과 레바논군

1)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일반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2) 유엔 안보리 결의 제425호는 △레바논 내 이스라엘 군사행동 중지, △이스라엘군 철수, △국제평화와 치안 회복, △레바논 정부 안정 확립을 위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설치를 내용으로 함(1978.3.19.).

3) 결의 제426호는 결의 제425호의 이행 및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초기 6개월 활동을 내용으로 함(1978.3.19.).

4) 제1701호는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병력 증강(2,000명 → 15,000명) 및 국제사회의 재정적·인도적 지원 확대 촉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적대행위의 중지 및 감시, △레바논군의 Blue Line 이동 전개 동행 및 지원, △이스라엘군 철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난민의 복귀 지원, △레바논군 및 정부지원 등의 임무가 추가됨(2006.8.11.).

5) 결의 제2749호는 △블루라인에 대한 완전한 존중 및 적대행위 중단 △UNIFIL 임무를 2025.8.31까지 연장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사무총장은 UNIFIL이 긴장완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 1701호(2006년) 이행에 관해 4개월마다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함.

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작전 및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동명부대⁶⁾는 2007년 7월 19일 첫 파견 이후, 16차례의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금번 국회에 제출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제17차 연장을 위한 것임.

< 동명부대 파견 현황 >

구 분	국회동의	파견기간	파견규모
파견 동의	2006.12.22	2007.7.19.~2008.7.18.	367명
1차 연장	2008.7.16	2008.7.19.~2009.7.18.	367명
2차 연장	2009.7.15	2009.7.19.~2010.12.31.	367명
3차 연장	2010.12.8	2011.1.1.~2011.12.31.	369명
4차 연장	2011.12.29	2012.1.1.~2012.12.31.	369명
5차 연장	2012.11.22	2013.1.1.~2013.12.31.	350명
6차 연장	2013.12.19	2014.1.1.~2014.12.31.	350명
7차 연장	2014.12.2	2015.1.1.~2015.12.31.	350명
8차 연장	2015.11.30	2016.1.1.~2016.12.31.	350명
9차 연장	2016.11.17	2017.1.1.~2017.12.31.	350명
10차 연장	2017.12.1	2018.1.1.~2018.12.31.	350명
11차 연장	2018.12.7	2019.1.1.~2019.12.31.	350명
12차 연장	2019.12.10	2020.1.1.~2020.12.31.	350명
13차 연장	2020.12.9	2021.1.1.~2021.12.31.	300명
14차 연장	2021.12.2	2022.1.1.~2022.12.31.	300명
15차 연장	2022.12.8	2023.1.1.~2023.12.31.	300명
16차 연장	2023.11.30	2024.1.1.~2024.12.31.	300명

※ 파견규모는 최대인원 기준임.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 티르(Tyre)⁷⁾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21년 이후 최대 300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

6) 동명부대 일반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7) 티르(Tyre) 시는 53개 소규모 시연합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광역시(Caza Tyre)로서 레바논의 4대 도시 중 하나이며, 남부 레바논 UNIFIL 작전 지역의 핵심 보급항임.

동의안에 첨부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명부대 조사활동보고서⁸⁾에 따르면, 동명부대는 작전지역 내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의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역량강화 지원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레바논 남부지역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군협력 활동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가로등 지원, 공공시설 보수 등 현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UNIFIL의 원활한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한편, 레바논 정부 및 주민들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2. 파견연장 동의안의 주요내용

동명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명부대 파견 규모는 UNIFIL 사령부 참모장교를 포함하여 300명 이내로 하고, 동명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⁹⁾에 따르도록 함. 아울러, 동명부대

8) 2024년 7월 7-13일간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레바논 및 남수단을 방문하여 △ 파견 부대 활동 보고 청취, △ 임무단 및 유엔측 주요인사 면담, △ 현지 작전현장 시찰 등을 통해 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함. 활동보고서는 「참고자료 4」 참조.

9)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란 국제연합 행동규범(UN Standards of Conduct)을 의미하며, 아래의 규정들이 포함됨.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254억 3,900만원)¹⁰⁾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있음.

3. 파견연장 동의 필요성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¹¹⁾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서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¹²⁾은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정부가 제시하는 파견연장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제연합 및 UNIFIL, 레바논 정부는 동명부대의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파견연장을 요청하고 있음.

둘째, 동명부대는 성공적 임무수행을 통해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한-레바논 관계 발전 등에 기여함.

셋째,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 「우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요원이다」라는 행동기준이 포함된 국제연합과 병력 공여국간의 양해각서
 - 유엔 사무국 직원 및 임무단의 전문가를 제외한 직원의 지위·기본적 권리 의무에 대한 준거법
 - 유엔 평화유지군의 국제인도법 준수
 - 징계사항에 대한 지침
 - 블루 헬멧의 10가지 행동 규범 등

10) 2025년도 동명부대 예산안 내역은 「참고자료 3」 참조.

11)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사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 시 검토사항

가. 레바논 정세 및 동명부대 안전 문제

레바논 정부의 정세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헤즈볼라 주축의 3·8 동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이후 Najib Mikati 총리가 재지명되었으나,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시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Michel Aoun 대통령이 2022년 10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아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음.

레바논은 내전(1975년~1990년)과 2006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간 전쟁으로 피해를지면서 경제 회복이 둔화하였으며,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 등으로 인해 레바논 내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음.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지상작전 개시(10.1) 등 블루라인(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으로부터 레바논 남부 5km 일대를 위주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이 심화되고 있

으며, 레바논 남부 및 동부, 일부 북부, 베이루트 등에서의 공습도 지속되고 있음.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로 인한 현장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에 대비하여, 동명부대는 철저한 상황 모니터링 및 대비 태세를 유지¹³⁾하고 있으며, UNIFIL 사령부는 유사시 철수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함.

참고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동명부대의 주둔지 및 작전 책임지역에서는 2007년 7월 동명부대가 임무를 시작한 이래, 2024년 10월 시점까지 동명부대 안전과 관련한 교전 등의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 UNIFIL 대상 사건·사고 발생 현황 >

일 자	현황	상세 경위	사상자	
			사망	부상
2011.5.27	이탈리아군 대상 IED ¹⁴⁾ 테러	이탈리아 전투부대 차량 4대 복귀 중 IED 폭발(시돈지역)	-	6
2011.7.26	프랑스군 대상 IED 테러	프랑스 장갑차 5대 복귀중 IED 폭발(시돈인근)	-	5
2011.12.9	프랑스군 대상 IED 테러	동명부대 주둔지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서 IED 폭발	-	5
2022.12.14	아일랜드군 대상 공격적 행위	휴가자 인솔을 위해 베이루트 공항으로 이동 중 기동로 이탈, 현지 주민들의 기동 저지 및 공격적 행위 발생	1	3
2024.10.10	UNIFIL 사령부 대상 공격	이스라엘군(IDF) 메르카바 전차가 UNIFIL 사령부 관측소를 타	-	2

13) 동명부대 안전 관련 대응체제 및 훈련 내역

- 상급부대와 연계한 신속대응부대 연합훈련(진별 1회)
- 통합상황조치훈련(분기별 1회) ○ 대피호 점령 FTX 훈련 시행(월 1회) ○ 화재 대응 FTX 훈련 실시(분기 1회)
- 작전 투입 전 우발상황 대비 상황조치 훈련 실시(일일 단위) ○ 작전 안전성 평가 시행(일일 단위)
- 악천우 및 낙뢰 발생시 조치사항 교육

일 자	현황	상세 경위	사상자	
			사망	부상
		격하여 평화유지대원 2명 부상		
2024.10.11	UNIFIL 사령부 대상 공격	UNIFIL 사령부 인근지역 폭발로 평화유지대원 2명 부상	-	2
2024.10.11	UNIFIL 대원 총격 부상	UNIFIL 본부에 있던 평화유지대원 한 명이 인근에서 진행되던 군사활동으로 인해 총격 부상	-	1

※ 외교부 제출자료

정부는 동명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명부대의 안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UNIFIL, 레바논, 이스라엘 등과 소통해 가면서 계속해서 동명부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임.

나. 국제사회 및 현지주민 평가

2024년 7월 7일 ~ 13일 간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¹⁵⁾’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레바논 및 남수단 현지를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파견 부대의 활동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로 유입되는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시행하는 등 그간 UNIFIL 임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여 UNIFIL의 우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책임지역 등에서 민군협력(CIMIC, Civil-Military Coordination) 활동

14)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 급조폭발물

15) 성과평가단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단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여·야당 수석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활동으로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활동 보고 청취, 레바논·남수단 정부 및 UNIFIL·UNMISS 고위급인사 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현지 정부·주민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다. 파견기간의 적절성

1978년 3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이 창설된 이래, 동명부대는 2007년 7월 처음 파견되었음. 2024년 10월말 기준, 파견기간이 17년 3개월이 됨.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¹⁶⁾에 따르면,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또는 파견부대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을 종료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¹⁷⁾는 국회가 의결을 통해 파견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종료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유엔 및 레바논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연장 요청, 동명부대의 활동성과 및 현 정세하 UNIFIL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파견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UNIFIL은 레바논-이스라엘 간 적대행위를 감시하면서, 레바논군이

1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7)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UNIFIL 책임지역을 인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임무 변화 또는 종료 요인이 부재하다는 입장임.

라. 파견 경비 보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병력공여국(파견국) 정부는 국제연합으로부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전받게 되나, 국제연합의 보전율 및 보전시차로 인해 정부예산이 소요됨.

동명부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05억 6,6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이 중 1,586억 6,200만원을 보전받음으로써 평균 보전비율은 49.5%임

동명부대의 연도별 경비보전 비율을 보면, 첫해인 2007년의 경우 국제연합과의 MOU 체결이 다소 지연(첫 파견 이후 1년 4개월 소요)되어 보전비율이 20% 초반으로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50% 전후의 보전율을 기록하고 있음.

< 동명부대 연도별 경비보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출액 (A)	26,117	17,218	22,375	20,762	19,298	18,347	17,541	16,631	17,529
보전액 (B)	5,906	11,738	11,378	10,625	10,578	10,934	8,685	7,250	8,330
보전율 (B/A, %)	22.6	68.2	50.9	51.2	54.8	59.6	49.5	43.6	47.5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지출액 (A)	16,552	17,591	16,776	19,346	17,535	19,467	16,419	21,062	320,566
보전액 (B)	9,621	9,971	9,180	10,921	6,032	9,110	9,355	9,048	158,662
보전율 (B/A, %)	58.1	56.7	54.7	56.5	34.4	46.8	57.0	43.0	49.5

※ 외교부 제출자료

마. 종합의견

파견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파견연장을 통해 국제연합의 핵심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연합 내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입지를 강화하고 유엔본부 및 임무단 고위직 진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점,

한-레바논 양자협력의 측면, 타국 군과의 연합작전 등의 수행을 통해 우리 군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는 국익 제고 차원에서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 안전, 파견 적정기간, 경비보전을 향상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 현재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동향을 지속 주시하는 동시에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충돌로 정세와 안전 관련 불안 요인이 있으나, 현 정세를 고려시 레바논 남부와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파견된 UNIFIL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¹⁸⁾임을 감안할 때 동명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10.13(일) 사무총장 대변인 성명을 통해 UNIFIL이 현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고 지속 주둔함으로써 UNIFIL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 표명

4. 대체토론의 요지

(이재정위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수출한 재료로 제작된 무기가 동명부대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취해야 할 입장 및 무기 수출·이전 등에 관한 통제 법안 부재에 대한 점검 필요

(윤후덕위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5인 부상이 확인된바, 확전 시 동명부대 안전에 위험성이 고조될 것이므로 부대 안전 당부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파견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우리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쟁 및 분쟁지역에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법을 통과시키든지, 분쟁 중인 지역은 무기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조건부 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	4612
----------	------

제출연월일 : 2024 . . .

제출자 : 정 부

제안 이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 가. 2007.7.19.부터 파견되어 2024.12.31.까지 연장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1.1.부터 2025.12.31.까지 1년간 연장함.
- 나. 국군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임.
- 다.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
- 라.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所要經費)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 받음.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89조 제6호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나. 예산조치 : 2025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레바논 평화유지단 :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을 헌법 제60조 제2항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1. 파견연장 필요성

- 국제연합 및 UNIFIL, 레바논 정부는 동명부대의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부대의 파견연장 요청
- 동명부대는 성공적 임무수행을 통해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한-레바논 관계 발전 등에 기여
-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 확대 필요

2. 파견경위 및 경과

- 1978. 3.19. 안보리 결의(425호, 426호)에 의해 「UNIFIL」 설치
- 2006. 8.11. 국제연합, 국군부대의 파견 요청
- 2006.12.22. 파견동의안 국회 가결
- 2007. 7.19. 동명부대 파견
- 2008. 7.16.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08. 7.19. ~ 2009. 7.18.)
- 2009. 7.15.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09. 7.19. ~ 2010.12.31.)
- 2010.12. 8.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1. 1. 1. ~ 2011.12.31.)
- 2011.12.29.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2. 1. 1. ~ 2012.12.31.)
- 2012.11.22.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3. 1. 1. ~ 2013.12.31.)
- 2013.12.19.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4. 1. 1. ~ 2014.12.31.)
- 2014.12. 2.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5. 1. 1. ~ 2015.12.31.)
- 2015.11.30.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6. 1. 1. ~ 2016.12.31.)
- 2016.11.17.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7. 1. 1. ~ 2017.12.31.)
- 2017.12. 1.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8. 1. 1. ~ 2018.12.31.)
- 2018.12. 7.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19. 1. 1. ~ 2019.12.31.)
- 2019.12.10.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20. 1. 1. ~ 2020.12.31.)
- 2020.12. 9.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21. 1. 1. ~ 2021.12.31.)
- 2021.12. 2.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22. 1. 1. ~ 2022.12.31.)
- 2022.12. 8.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23. 1. 1. ~ 2023.12.31.)
- 2023.11.30. 파견연장안 국회 가결(2024. 1. 1. ~ 2024.12.31.)
- 2024.7.7.-9.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 조사·점검(레바논 방문)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개요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25호(1978)-제426호(1978)에 따라 설립
- 교전중지 감시, 이스라엘 철군 감시, 레바논군 지원 등 임무 수행
- 49개국 총 9,605명 참여중(2024.6.30. 기준)

3. 기본 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 **300명** 이내(UNIFIL 사령부 참모장교 포함)

나. 파견지역 :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한국군 책임지역

다. 임 무

-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 인도주의적 활동

라. 파견연장기간 : **2025.1.1.부터 2025.12.31.까지**

- 단, 우리측 필요시 파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마. 지휘권 및 법적 지위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며, 작전수행은 UNIFIL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고, 기타사항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

바. 소요 예산

- 소요예산(약 254억원)은 2025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
 -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명부대 조사활동보고서

1. 조사활동 개요

-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이 동명부대의 활동성과 및 파견연장 필요성 검토를 위해 레바논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점검
 - ※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 활동(2024.7.7.-9. 레바논 방문)
 - 구성 :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단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계관, 여·야당 수석전문위원
 - 주요 활동 : UNIFIL 및 레바논 정부 주요 인사 면담, 파견부대 활동 보고 청취 등

2. 파견부대 주요 성과

- 동명부대는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의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역량강화 지원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레바논 남부 지역 안정화에 기여
 - ※ 주요 실적
 - 단독·연합 감시정찰작전(고정감시초소, 기동 및 도보정찰, 임시검문소 운용 등)
 - 레바논군 역량강화를 위한 연합훈련(월 1회) 및 연합작전(정찰) 실시
 - UNIFIL과의 연합훈련(마켓웍스 작전, 통합상황조치, UN직원 대피훈련 등)
- 민군협력 활동을 통해 UNIFIL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한편, 레바논 정부 및 주민들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
 - ※ 주요 실적
 - 태양광 발전시설·가로등 지원, 공공시설 보수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 레바논군 병영시설 개선(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으로 임무수행여건 향상
 - 태권도·한국어 교실 운영, 의료지원(일반, 치과, 수의) 등 친한화 활동

3. 파견연장 문제

- △국제연합 및 UNIFIL, 레바논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연장 요청
△동명부대 활동성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UNIFIL 임무 연장
△2024-25년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동명부대의 파견연장 필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병력공여국(파견국) 정부는 국제연합으로부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전 받게 되나, 국제연합의 보전을 및 보전시차로 인해 정부예산 소요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파견연장기간 : 2025.1.1.부터 2025.12.31.까지
- 부대규모 : 300명 이내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지출	○ 동명부대 운영유지비	25,439	-	25,439
	소 계 (a)	25,439	-	25,439
수입	○ 국제연합 경비보전금	10,614	-	10,614
	소 계 (b)	10,614	-	10,614
□ 총 비용 (a-b)		14,825	-	14,825

라. 부대의견 : 지출은 2025년 예산 편성안을 적용하였고, 수입은 국제연합으로부터 받을 경비보전 예상액임.

마. 작성자

작성자 이름	외교부 유엔과장 김남기
연락처	02-2100-7234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출

o 부대운영/유지 예산 : 25,4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25,439
해외파견 근무수당	11,054
급식피복	4,317
장비물자	1,110
수송	4,202
위성통신	1,858
시설	1,275
기타 부대운영	894
민군작전	729

나. 수입

o 국제연합으로부터 경비보전 예상액 : 10,6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비보전 예상액
계	10,614
인원경비	5,995
주요장비	1,967
운영유지	1,469
수송비용	1,18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 중앙정부	25,439	-	25,439
○ 일반회계	25,439	-	25,439
○ 예 비 비	-	-	-
☐ 지방자치단체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25,439	-	25,439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5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25,439백만원 반영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외교부 유엔과장 김남기
연락처	02-2100-7234